

"개인권익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구래복

외국어대 스웨덴어과 교수

본인이 규칙적으로 보는 신문은 한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신문의 사회면 보도에 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읽던 신문들을 근거로 하여 스웨덴신문과 비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국신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범인들의 주소, 성명, 그리고 사진이다. 사건관계를 보도할 때 한국신문의 보도 태도는 이와 같이 공식화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에 그러한 보도자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센세이션을 요구하는 독자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세한 보도를 하려는 의도는 높이 살 만하지만 독자들의 요구만을 만족시켜주기에 앞서 기사와 관련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생각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아득한 옛날부터 법에 따라서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의 가족들도 죄인으로 여기던 전통이 있음을 알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그런 사상이 남아 있으므로 해서 신문기자들이 범인에 대해 자세한 보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범인의 주소나 성명이 보도됨으로써 범인의 친척이나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모를 당하기도 하며 특히 범인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모욕을 받기까지 하는 일이 있다. 더구나 중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범인의 부모나 자녀들이 해고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나친 보도자세는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 볼 때 얼마 전 한국신문에서 보도한 여대생 살해사건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한국신문에서는 여대생 살해사건의 용의자를 마치 진범인 양 남자대학생의 성명과 사진 그리고 부모의 직업과 직장소재지까지 밝히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것은 스웨덴 신문일 경우라면 법에 저촉된다. 스웨덴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의 사진이나 성명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와 같이 커다란 사건(어떤 면에서는 전혀 보잘것없는 사건이기도 한데)이거나 작은 사건(예를 들어 소매치기나 절도범 등에 관한 사건일 경우)이거나 간에 범인의 이름이나 주소, 사진 등 피의자를 알 수 있는 사항은 스웨덴 신문에서는 보도하지 않는다. 단지 보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의 사실만 알려주고 만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커다란 사건일 경우에는 몇 살 난 남자, 또는 여자가 어떤 종류의 사건을 저질렀다는 정도의 사실만을 보도함으로써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신문에서 피의자에 관해 상세한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는 것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경상도 의령에서 어떤 순경의 총기난사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해 만일 스웨덴 신문이 보도한다면 순경개인에 관한 상세한 인적 사항의 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공익에 깊이 관련된 사건일 경우라면 보도하겠으나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수사가 끝난 다음에 범행에 대한 이유나 사건경위를 공표하게 된다. 더욱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신문에서는 시체가 늘어져 있는 초상집 장면이나 피를 흘리고 있는 부상자의 모습, 그리고 관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 등 무섭고 잔인한 장면들을 무조건 보도한 것은 혐오감을 주며 지나친 행위로 느껴졌다. 스웨덴 신문에서는 이러한 사진들을 보도하는 것은 스스로 삼가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 신문의 예를 들면, 어떤 공장의 노동자가 작업 중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은 물론, 공장의 사장이나 대표자의 이름과 사진 등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한 사고에 대해 「어디에 위치하는 공장에서 어떤 이유로 그 회사의 사장이 책임이 있다」는 정도로만 보도하고 만다. 이러한 스웨덴 신문의 기사보도 태도와 비교해 볼 때, 한국신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가 난 공장의 사장이나 대표자의 주소, 성명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커다란 비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한국신문에서는 죽은 사람의 명단이 소상하게 밝혀지는데 스웨덴 신문에 서는 교통사고의 사실은 똑같이 보도하겠지만 죽은 사람의 명단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커다란 차이가 될 것이다. 명단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 등 관계자들의 충격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물론 유명인이나 공적 인사일 경우에는 그 이름을 밝힌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한편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는 가족들의 궁금증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사망자 명단의 확인은 필요시 해당기관이나 회사에 직접 문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명단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더구나 신속히 보도하려고 경쟁을 하다가 잘못된 사진이나 이름이 나감으로써 명중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을 경우에 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스웨덴은 1916년에 신문평의회를 개설한 이래 1969년의 개혁을 거쳐 프레스 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기사에 의한 피해나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며, 제소건수도 연간 수 백건씩 이르고 있는 것은 스웨덴 시민들이 대단히 자기권리에 대한 주장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에 대한 것이나 잘못된 기사로 인해 제소가 되었을 경우 해당신문사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그에 대한 보상이나 정정보도를 행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하다.

이렇게 볼 때, 스웨덴 신문의 보도태도는 개인에 대한 최대한의 권익보호와 개인을 존중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실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자기권리 주장도 대단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신문의 사회면보도와 비교할 때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느끼며, 이에 대한 보상이나 정정보도에 관한 태도도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